# 「圖書館法」의 改正에 즈음하여

◆ 編輯者 註 ◆

본 협회는 도서관 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한 특별 위원회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지난 2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에게 개정 초안을 배부한 바 있읍니다. 도서관법은 우리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그 대강을 게재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전체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법개정 기술상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있음을 미리 밝혀두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하겠아오니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1. 圖書館法의 沿革

1955. 4.16 韓國圖書館協會의 創立總會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强調하고, 이의 制定을 推進하기로 決議

1956. 1. 7 圖書館法 第1次 草案을 作成하였으나 推進 途中에 流産

1957. 5. 8 韓國圖書館協會에 圖書館法 制定委員會를 構成

1957.11.15 圖書館法 第2次 草案을 作成(6章 35條)

1958. 7 第2次 草案의 內容을 一部 修正(4章 30條)

1958. 7 圖書館法 制定委員會를 行政分科委員會로 改編하여 圖書館法의 制定推進과 其他 行政的인 問題를 檢討

1958.11.20 圖書館法의 制定을 正式으로 國會에 提議(閔壯植 議員이 提案)하였으나 廢棄

1959. 5 圖書館法 第3次 草案을 作成(4章 35條)

1961. 6.10 最高會議에 圖書館法 制定을 建議

1962. 7 次官會議에 上程하였으나 다시 廢棄

1963. 4 最高會議에 再上程 檢討

1963.10. 5 最高會議 常任委員會에서 4章 29條로 된 現行圖書館法을 通過

1963.10.28 法律 第1424號로 圖書館法을 公布

1965. 3.26 圖書館法施行令을 大統領令 第2086號로 公布

1966. 3.23 圖書館法施行規則을 文敎部令 第172號로 公布

1967. 3.27 圖書館法施行令을 大統領令 第2964號로 改正

1969. 7.19 圖書館法施行細則을 文敎部令 第236號로 公布

1969.11. 3 圖書館法施行令은 大統領令 第4191號로 改正

## 2. 圖書館法 改正의 意義

現行 圖書館法이 成立된 것은 1963年 10月 28日이다. 今年 10月 28日로서 滿 13年이 經過되는 셈이다. 이 13年間 우리나라 圖書館의 變貌와 進展은 極히 劃期的이라 하겠다. 그것은 圖書館法이 根源이 되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圖書館에 관한 法律制定의 輿望은 8.15光復以後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큰 念願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에도 眞實한 圖書館이 8.15 光復과 더불어 民主化過程에서 發展의 機會가 賦與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民主化 過程의 첫걸음도 내어딛기 前에 6.25動亂이라는 一大參禍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因하여 國家總力을 國防에 傾注함으로써 文化活動(圖書館活動)은 一時 停滯의 悲運을 免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戰爭이라는 非文化的 狀況에서 解放된 國民은 讀書에 관한 關心이 急激하게 要求되어 圖書館의 飢饉이라는 現實과 같이 圖書館의 存在가 浮刻되어 가는 것이 常例이듯이 民族動亂의 收復과 때를 같이하여 圖書館內部에서 새로운 覺醒에 의한 活動을 展開하였으며 社會的으로도 圖書館의 存在意義가 徐徐히 轉換되는 過程에서 文化國家建設의 絕叫와 함께 全國의 圖書館은 圖書館協會를 據點으로 하여 法案의 檢討와 法制定에 努力한 結果가 바로 現行 圖書館法이다.

그러나 現行 圖書館法의 當初 立案過程에서 全國의 市郡邑面에 公共圖書館의 義務的 設置에 焦點을 두었으나 法案은 緊縮財政의 壁에 부딛쳐 過大한 國庫의 支出을 필요로 하지 않은 微溫的 勸告的인 性格으로 落着되고 말았다.

當時 韓國의 國情이나 社會輿論도 이러한 强制力이 缺한 法律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怨聲도 없지 않았으나 한편에서는 이것을 民主主義 社會의 發展過程으로 보고 國民의 意慾을 鼓吹하는 意圖를 지닌 眞實한

意味의 純文化的 立法이라는 點에 純粹價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國家的인 圖書館 助成의 僅少에 不滿을 안고 韓國의 圖書館은 一齊히 民衆과 같이 存在한다는 圖書館의 意識을 가지고 國民을 爲한 圖書館活動에 突進하여 왔다. 그것은 바로 法의 精神을 잘 欽慕한 圖書館人의 純粹性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法律을 13年間 適用하여 본 結果, 너무나도 아쉬운 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로 强制力이 缺한 微溫的이며 勸告的인 圖書館 助成의 法的根據는 너무나 弱하다. 둘째는 너무나도 財政的 뒷받침이 弱하다. 세째로는 圖書館의 專門性이 疎外當하고 있다. 네째는 國家의 圖書館政策이 缺如되어 있다. 다섯째 全國 圖書館 組織體制가 整備되어 있지 않아 圖書館마다 個別的이고 獨立的인 活動으로 資料의 汎國民的 利用이나 資料蒐集의 重複性 등 封建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試行錯誤的인 法的保護로서는 圖書館 活動의 所産은 意氣沈滯일 뿐이다. 社會가 急速히 變遷해 가는 現時點에서 諸 落後的인 法的 테두리를 發展的이고 現實的인 法으로 補完하여 民主文化 國家暢達에 이바지 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

## 3. 圖書館法 改正案의 立案趣旨

◎ 圖書館法 公布後 圖書館界에서는 우리나라 圖書館制度의 根據로서 또한 圖書館文化의 振興法으로서 未洽함을 느끼면서도 當時의 國家形便에서 不可避한 事情에 基因함을 前提로 이것은

① 國家의 圖書館에 대한 確實한 意志와 關心의 表現이란 點

② 우리나라 圖書館과 圖書館人에 대한 法制上의 根據가 確認되었다는 點

③ 또한 重要한 文化立法이며 社會立法이었다는 點에서 그 意義를 높이 評價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오늘의 韓國 圖書館을 이룩하는데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

◎ 이 法은 그동안 運營을 通하여 그가 갖고 있는 矛盾과 不實性은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의 沮害要因임이 指摘되어 改正의 不可避性이 提起되어 왔다. 특히 圖書館法 公布 滿 13年 國內外의 與件과 狀況은 많은 變化發展이 있었고, 兩次에 걸친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成功은 相對的으로 文化·社會發展에의 政策的 重點이 切實히 要請되게 되었으며, 10月維新 以後 우리나라 國家發展에 있어 새로운 段階에 突入, 維新國家에 副應한 새 時代를 위한 社會改革이 要請되고 있다. 우리는 이때에 먼저 圖書館이 先進社會에 얼마나 寄與하고 있으며, 또 圖書館의 役割을 社會的으로 重要視하고 있는가를 想起하면서,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圖書館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祖國을 近代化하는데 있어서 社會敎育이 占하는 役割이 重大함은 이제 다시 言及할 必要가 없다. "光復 30年" 우리나라는 學校敎育制度의 創業 및 改革이 있었지만 憲法에 保障된 敎育의 機會均等에 대한 實을 거두자면 國民敎育의 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學校敎育과 더불어 社會敎育의 劃期的인 振興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趣旨에서 볼 때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社會敎育의 實施는 어디까지나 國民의 自主的인 立場을 尊重하여 施行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社會敎育을 위하여 國家나 地方公共團體는 國民이 어떠한 場所 및 機會를 利用하여 스스로 敎養을 높일 수 있는 環境을 整備할 任務를 履行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은 이와 같은 意味에서 社會敎育機關으로서 極히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圖書館現狀은 先進諸國에 比하여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事由가 健全한 發達을 圖謀하기 위한 法的인 새로운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各 方面에서의 要望이 輿論化되어 있는 것이다.

◎ 社會敎育的인 立場에서 圖書館의 重要性과 特殊性으로 因하여 別途의 法律的 規制가 必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本 韓國圖書館協會는 全體圖書館界와 有關機關 등의 衆意를 모으고 이를 銳意 硏究檢討 綜合하여 여기에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한 基準이나 奬勵方法 등을 規定한 새로운 發展的이고 現實的인 圖書館法 改正案을 立案하게 된 動機이다.

이 改正法案이 成立되어 圖書館活動에 새롭고 發展的인 法的 根據가 賦與된다면 우리나라 圖書館機能의 充實化에 期待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 4. 圖書館法 改正要綱과 骨子

### 가. 改正要綱

(1) 改正方向에 있어 國立中央圖書館法, 公共圖書館法, 學校圖書館法 등 分立主義에 의한, 圖書館에 대한 基本的인 法制面에서의 論議도 있었으나 現行法과 같이 單一法體制가 國家政策上 有益하고 옳다는 結論을 얻었다.

(2) 本 改正案은 審議上의 便宜를 위하여 全面改正의 形式을 피하고 現行法 形式테두리 안에서 補完削除 形式을 取하였다.

(3) 內容의 補完과 削除變更도 重要하고도 不可避한

것을 除外하고는 既存法內容의 改正에 신중을 期하였다.

(4) 既存法上 "閣令으로 定한다"와 같이 論難의 餘地가 없는 것은 모두 "大統領令으로 한다"로 고치었다.

(5) 補完의 경우 해당 條項에 連結 內容의 體系性을 維持하였으며 條表示는 順延하였다.

## 나. 改正骨子

(1) 現行法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을 單純한 公共圖書館으로 取扱하고 있는 것을 國內外에 韓國圖書館을 代表하는 館種을 超越한 超然한 姿勢確立과 機能을 擴大强化하여 國家의 센터圖書館으로서의 面貌를 具現한다.

(2) 圖書館 施設 및 運營에 대한 基準의 設定으로 圖書館의 平準化한 發展策을 講究한다.

(3) 連續的인 各種 圖書館 運營에 必要한 財政確保策을 講究한다.

(4) 國家文獻의 納入條項을 補完하여 圖書, 雜誌 및 新聞 등 一般的인 出版物外에 非圖書資料인 視聽覺資料 등도 納入하도록 하여 國家貴重文化財의 網羅的 蒐集과 保存策을 講究한다.

(5) 圖書館 振興에 관한 重要한 施策의 審議機構 設置策을 마련한다.

(6) 利用者의 低邊擴大를 圖謀(自動車文庫, 巡回文庫, 職場文庫活動, 圖書館間 相互協力, 入館料의 徵收撤廢 등 圖書館의 積極的인 活動 展開 등) 한다.

(7) 地方센터 圖書館制度의 確立으로 圖書館協力組織을 體系化할 수 있게 한다.

(8) 大學 및 學校敎育을 바람직하게 發展시키기 위하여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의 機能擴大를 도모한다.

(9) 情報社會에 對處하기 위한 特殊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을 積極奬勵한다.

## 5. 圖書館法 改正案의 大綱

圖書館法의 改正案에 대하여 圖書館의 興望을 銳意檢討하여 現實的인 事情에 符合되는 法案으로 改正立案하는데 努力하였으나 그 大綱은 다음과 같다.

### 가. 法의 構成

| 現行法 | | | 改正法 | | |
|---|---|---|---|---|---|
| 章 | 節 | 條 | 章 | 節 | 條 |
| 第1章 總則 | | 13 | 第1章 總則 | | 9 |
| | | | 第2章 國立中央圖書館 | | 2 |
| 第2章 公共圖書館 | 第1節 總則<br>第2節 國立中央圖書館<br>第3節 公立의 公共圖書館<br>第4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 11 | 第3章 公共圖書館 | 第1節 總則<br>第2節 公立의 公共圖書館<br>第3節 私立의 公共圖書館 | 14 |
| | | | 第4章 大學圖書館 | | 3 |
| 第3章 學校圖書館 | | 3 | 第5章 學校圖書館 | | 5 |
| | | 3 | 第6章 特殊圖書館 | | 3 |
| 第4章 罰則 | | 2 | 第7章 罰則 | | 2 |
| 4章 29條 | | | 7章 38條 | | |

### 나. 各章別 要點

**第1章 總則**

1) 第3條 圖書館의 種類에서 圖書館의 設立目的에 따른 種類區分에 大學圖書館을 追加하였고 各級圖書館機能을 第2項, 第3項, 第4項, 第5項에서 具體的이고 現實的으로 明示하였다.

2) 現行 第4條의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規定을 삭제하였다.

3) 第4條에서 圖書館의 施設을 圖書館施設, 圖書館

資料 및 運營으로 고치고 第3項에서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을 圖書館施設, 圖書館資料 및 運營으로 하여 具體的인 圖書館平準化方案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도록 하였다.

4) 第6條에서 國務總理所屬下에 圖書館政策에 필요한 審議機構로 "圖書館發展委員會"를 設置하는 條項을 新設하였다.

5) 第8條에서 現行 第12條의 圖書館資料의 提供과 納本을 圖書館資料의 納入으로 고치고 從來에 納入(本)을 圖書, 定期刊行物 등 圖書類에 限定한 것을 改正法에서는 非圖書資料, 視聽覺資料 등도 納入할 수 있도록 擴大하여 國家文化財의 網羅的 蒐集과 保存을 可能케 하였다.

**第 2 章 國立中央圖書館**

6) 第17條, 第18條 現行法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을 一般公共圖書館과 同格化하여 取扱한 것을 章을 달리하여 獨立시켰고 아울러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强化시키기 위하여 從來 文敎部長官所屬下에 있던 것을 國務總理所屬下에 두도록 하였다.

**第 3 章 公共圖書館**

7) 現行法 "第2章 公共圖書館"을 改正法에서는 "第3章 公共圖書館"으로 하고 이를 總則, 公立의 公共圖書館,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3個節로 區分하여 機能과 活動을 具體化하였다.

8) 第13條에서 現行 第7條 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奬을 "國家 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義務"로 하여 從來의 公共圖書館設置의 勸奬規定을 義務規定으로 고치어 福祉國家를 具現하는 積極的인 文化政策을 遂行토록 하였다.

9) 第8條의 現行法에서는 圖書館使用料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改正法 第15條에서 이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간의 後進的 圖書館奉仕에서 發展的인 圖書館本來의 奉仕로 轉換시켰다.

10) 第18條에서 市道單位 地域內에 있는 公立의 公共圖書館中 1館을 地方中央圖書館으로 指定하여 地域의 各種 圖書館을 指導連絡하고 統一的 協力體制를 整備토록 하는 條項을 新設하였다.

11) 第20條 公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에서 從來의 圖書館施設과 設備에 要하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기타 經費도 補助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고 아울러 第22條 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에서 司書職員을 둘 경우에만 補助할 수 있는 것을 기타 經費의 一部도 補助할 수 있도록 改正함으로써 公共圖書館의 育成을 積極 도모할 수 있는 財政補助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第 4 章 大學圖書館**

12) 現行法에서는 大學圖書館에 대한 事項을 第3章 學校圖書館에 포함하여 取扱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第4章으로 하여 大學圖書館에 대한 設置, 職員, 一般利用에의 提供 등으로 나누어 第26條, 第27條, 第28條의 條項을 新設함으로써 大學圖書館에 대한 事項을 具體化하였다.

**第 5 章 學校圖書館**

13) 現行法 "第3章 學校圖書館"을 改正法에서는 "第5章 學校圖書館"으로 하고 第30條에서 學校圖書館育成을 위한 國家의 任務를 規定한 條項을 新設하였다.

14) 第33條에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施設 및 運營의 基準에 達할 수 있도록 學校에 補助金을 支給하여 學校圖書館의 平準化한 發展을 期할 수 있도록 條項을 新設하였다.

**第 6 章 特殊圖書館**

15) 現行法에서는 特殊圖書館이 適用排除되어 있는 것을 改正法에서는 이를 改正하여 第6章에 特殊圖書館章을 新設하여 第34條, 第35條, 第36條에 設置, 職員, 一般利用에서 提供 등 特殊圖書館에 대한 一般事項을 各各 規定하는 條項을 新設함으로써 特殊圖書館의 設置運營을 法으로 뒷받침 하였다.

**第 9 章 罰 則**

16) 現行法 "第4章 罰則"을 改正法에서는 "第7章 罰則"으로 하였으며 第37條에서 罰金賦課額 1萬원 以下를 現實化하여 10萬원 以下로 改正하였고 아울러 第29條의 過怠料策定基準을 5倍에서 10倍 以下로 그 基準을 現實化하여 改正하였다.

## 6. 圖書館法施行令 改正案의 骨子

提出된 圖書館法 改正案을 토대로 施行令 改正案을 作成하였는 바 그 골자는 다음과 같음.

가. 公共圖書館基準을 補完하고 大學圖書館基準과 學校圖書館基準을 設定하였음.

나. 司書의 區分과 資格基準을 現實的으로 再調整하였음.

다. 司書의 機能 및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再研修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圖書館政策의 諮問機關인 圖書館發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였음.

마. 圖書館資料의 國家에 대한 納入範圍를 擴大하여 國家文化財의 網羅的인 蒐集과 保存을 可能케 하였으며 從來 納入에 관한 法的根據가 圖書館法 및 大統領令(國際交換을 위한 圖書館資料의 納本規定)으로 二元化되어 있던 것을 圖書館法施行令에 單一化함으로써 納入의 效率을 期할 수 있게 改正함.